미래교육의 중심
새로운 경기교육

2024년 학교환경위생관리 기본계획

자율 균형 미래

2024. 2.

경기도교육청

(대외협력국 학교급식보건과)

기본방향

◇ **학교주변 교육환경 보호 강화**

- 교육환경보호구역 관리로 학교 주변 유해업소 정비 활동 강화
- 교육환경보호 시행계획에 따른 조치 강화

◇ **학교 내 안전한 보건환경 조성**

- 학교 먹는 물의 수질검사 등 철저한 위생관리로 안전성 확보
- 교사 내 정기적인 공기질 관리를 통한 쾌적한 실내환경 제공
- 학교 매점의 위생적 관리로 학생 건강 유지·증진

◇ **학교 석면 관리 강화**

- 학교 석면 건축물에 대한 올바른 관리
- 학교 석면 건축물의 정기적인 위해성 평가 실시

목 차

Ⅰ. 교육환경보호제도 운영 관리

1) 교육환경보호구역 관리 ····· 1

2) 교육환경보호 시행계획에 따른 조치 강화 ····· 5

Ⅱ. 학교 먹는 물 위생관리

1) 수돗물 위생관리 ····· 6

2) 지하수 위생관리 ····· 8

3) 정수기 위생관리 ····· 10

4) 학교 먹는 물 실태점검 및 관리지원 ····· 11

Ⅲ. 교사 내 환경위생 관리

1) 공기질 관리 ····· 13

2) 소음 관리 ····· 18

3) 소독 관리 ····· 19

4) 매점 위생관리 ····· 20

Ⅳ. 학교 석면건축물 관리 ····· 21

Ⅴ. 보고사항 ····· 24

Ⅵ. 참고자료 ····· 25

2024년 학교환경위생관리 기본계획

1 교육환경보호제도 운영 관리

가. 기본방침

○ 건강하고 쾌적한 학교 주변 교육환경 조성으로 자라나는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을 도모

○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을 적법하게 관리하는 등 관련 교육환경 보호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영

나. 추진내용

1) 교육환경보호구역 관리

○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고시 업무 철저

- 학교시설의 도시관리계획부터 결정까지 지방자치단체와 원활한 협의를 통해「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학교설립 예정지의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이 지연되거나 누락되지 않도록 조치
- 교육환경평가 승인 후 해당 학교용지의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 전까지 학교설립 예정지에 준하여 관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교육환경을 보호 조치
- 지방자치단체장이 학교설립 또는 정비계획 수립 시 교육환경보호 등을 위해 실시하는 교육환경평가를 누락하거나, 학교시설의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교육감과 사전 협의 없이 진행되지 않도록 조치
- 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예정 교육환경보호구역도 게재하고, 관련 현황을 관련기관에 통보하여 금지행위 및 시설 차단 등 교육환경 보호조치 마련

※ 관련 민원 안내 시 설정 고시 예정지역임을 반드시 안내

- 각급 학교(대학 포함)에 대한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 여부를 수시로 파악하여 미설정 학교, 학교경계선 및 출입문이 변경된 경우 등 즉시 조치

※ 실제 학교위치와 토지이용계획 확인원과의 일치 여부 등의 검증 조치

- 학교경계선 및 출입문 변경 등에 따른 보호구역 조정 고시 철저
- 교육환경정보시스템에 교육환경보호구역 도면 등재관리 (100% 등재 완료될 수 있도록 확인 조치)

❍ 교육환경보호구역 실태점검 및 관리 철저

- 교육장은 연 1회 이상, 학교장은 반기별 1회 이상 실시
- 실태점검 실시 후 교육환경보호구역 점검 대장 작성

☞「경기도교육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규칙」별지 제2호서식

- 학교별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각종업소(불법 영업시설 포함)의 위치를 표시한 교육환경보호구역 관리도 비치
- 교육환경보호구역 점검 시 위반 업태 사례(예, 일반음식점이 단란주점 등 유흥업소와 같은 영업을 하는 경우) 색출·고발조치

❍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운영 중인 적법 해제시설 현황파악 철저

- 학교: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행위 및 시설현황 작성·보관
- 교육지원청: 학교별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시설현황 작성·보관

☞「경기도교육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규칙」별지 제1호서식

❍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불법시설의 이전·폐쇄 조치 적극 추진

-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불법시설은 관계기관에 정비요청(최소 연 2회 이상)

☞ 불법시설에 대한 정화조치가 신속히 이행되지 않을 경우 독촉공문 발송

- 고질적 유해업소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시설철거 등을 위한 적극적 행정조치 요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10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행정대집행 등)

○ 학교 주변 교육환경 보호 강화를 위한 관계부처 합동단속 정례화

- 교육지원청, 경찰서, 시(군)청이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학교 주변 유해업소에 대한 합동단속 실시 및 적발업소 관리카드 작성·공유
- 관계부처 합동 집중 단속(3월, 9월 예정) 시 적극 협조

○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에 대한 설치규제 완화

- 당구장·만화대여업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설치 금지시설에서 제외하고, 학습과 교육환경에 미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한국전통호텔업과 가족호텔업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설치를 허용('22. 3. 25.시행)

○ 교육환경보호구역 표지판 설치 및 관리기준 준수

- 학교별 교육환경보호구역 알림 표지판 설치 확인(「경기도교육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학교장은 의무적 설치)

※ 기존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학교별 예산 범위 내에서 점진적 교체 추진

○ 지역 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운영 내실화

-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시설에 대한 심의 시 현장 확인 및 철저한 분석으로 불필요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
- 지역위원회 심의 시 학생들의 학습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심층 검토할 수 있도록 기능 강화
- 지역위원회 심의 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및 학부모 참관 조치, 민원인의 기피신청, 학교장 의견을 반영한 재심의 등 지역위원회 구성·운영 관련 법령 사항 적극 준수
- 지역위원회의 학부모는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위원만을 인정토록 명확히 규정('22.3.25.시행)

○ 교육환경정보시스템 적극 활용

- 교육환경정보시스템을 통해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고시 현황,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심의 이력정보, 교육환경평가서 검토·심의, 진행현황 등 등록 및 공개
-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각종업소 및 불법시설 현황을 등록 및 공개

※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에 대한 심의 정보는 심의 결과가 통보된 날부터 3일 이내 교육환경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개(교육지원청에서 직접 공개하기가 어려운 경우 한국교육환경보호원에 관련 자료 송부 후 공개 요청)

○ 교육환경보호제도 대국민 홍보 강화

-「교육환경보호구역제도」에 대한 대국민 홍보 및 관리강화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행정력 제고
- 교육환경보호구역 통합안내시스템을 교육지원청 및 학교 홈페이지에 연계하여 학교 주변 토지이용 정보제공 및 교육환경보호구역 포함 여부 확인 등 민원인의 행정기관 방문에 따른 불편 해소와 교육환경보호구역 제도 홍보

○ 업무담당자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참여

- 교육환경보호 정책의 이해 향상을 위한 이러닝 입문 과정인 '교육환경보호제도 이해(12차시)' 연수과정 운영(한국교육환경보호원 이러닝 교육과정)
- 교육환경보호업무 신규 담당공무원을 위한 단기 직무과정(8시간, 3월 및 8월)과 직무연수 심화과정(18시간, 6월) 운영

○ 학교 인근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인근 안전대책 강화방안 마련

- 학교 인근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중 사고대비물질을 상위규정 수량

이상 취급하는 사업장에 정기 현황조사 및 해당 화학물질의 사고 발생 시 영향 범위 내 학교 현황파악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에 따라 사고대비물질을 다량 취급하는 시설의 관리에 관한 '위해관리계획서' 제출제도가 '상위 규정수량' 관리제도로 개정된 사항을 반영한「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일부개정('22.3.25.시행)

- 사고 발생 시 영향 범위 내 학교를 대상으로 주민 고지 내용 확인 및 학교 구성원 대상 교육 및 관련 제도 홍보 안내
- 긴급상황을 고려한 학교 내 대응체계 강화 등 조치 강화(학교현장 재난유형별 교육 훈련 매뉴얼 반영, '19. 4. 2.)

※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인근 학교 안전대책 강화를 위한 후속 조치 안내 참고

2) 교육환경보호 시행계획에 따른 조치 강화

○ 교육환경보호업무 공개제도 활성화로 행정 신뢰성 강화

- 교육환경평가서 심의 안건 접수순서 공개로 행정의 투명성 확보
- 교육환경정보시스템 테이터 이력 지속적 정비로 국민의 알권리 보장

○ 교육환경평가 사후관리 강화로 학생 안전권 확보

- 체계적인 사후관리로 교육환경 저해요인 사전 예방
- 교육환경 피해가 우려되는 사업장을 우선으로 실시하며, 가급적 공종별 현지조사를 원칙으로 추진
- 2024년 교육환경평가 사후관리 추진계획 수립·시행(예정)

※ 교육환경평가 사후관리 현장지원, 경기도형「교육환경평가 사후관리 업무 매뉴얼」작성 T/F 운영, 교육환경평가 승인사업장 집중관리 시범운영 등

2 학교 먹는 물 위생관리

가. 기본방침

○ 학교 먹는 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위생적인 물의 공급을 통해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 보호, 유지·증진에 기여

○ 학생과 교직원에게 공급하는 먹는 물은「먹는물관리법」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 기준에 적합한 물 제공

나. 추진내용

1) 수돗물 위생관리

○ 신축학교 및 상수도 인입 학교는 수돗물을 직결급수 조치

- 지방자치단체(상수도사업본부)와의 협의를 통하여 노후 수도관 교체 등 안정적이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 강구

○ 먹는 물로 적합하게 공급되는 수돗물에 살균기 등 불필요한 장치에 대한 설치비 지원 등 부적정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철저

○「경기도교육감 소관 저수조관리 조례」에 따른 수돗물 위생관리 철저

- 저수조 관리에 따른 수돗물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위생적인 물의 공급 및 저수조의 정기적인 위생관리로 먹는 물 안전성 확보

○ 저수조 청소 등 관리 철저

- 직결급수가 곤란한 시설에 대하여는 시설 및 운영관리 철저(「수도법 시행규칙」제22조의3, 제22조의5 및 별표 6의2)

구분	횟수	관련규정
청소	반기별로 연 2회 이상 (가급적 개학 직전에 실시)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3, 제22조의5
위생점검	월 1회 이상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3, 제22조의5, 별표 6의2

- 저수조 신축 또는 1개월 이상 사용 중단된 경우 사용 전에 청소 실시
- 저수조의 청소주기(반기 1회 이상) 및 점검주기(월 1회) 준수 철저, 점검일지 작성·보관, 관리자 지정 등 책임관리제 수립·시행
- 저수조 용량 축소 또는 수위계 설치 등을 통해 체류 시간을 최대한 단축
- 청소 시 사용된 약품에 의하여 수질 기준이 초과되지 않도록 주의

○ 저수조 수질검사 등 관리 철저

-「수도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건축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건축물 또는 시설 안의 주차장 면적은 제외)인 학교에 대한 정기 수질검사 실시 철저

구분	검사횟수	검사항목	관련규정
수질검사	연 1회 이상	6개 항목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3, 제22조의5

- 저수조 또는 저수조 최단 수도꼭지에서 채수하여 탁도, 수소이온농도, 잔류염소,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분원성대장균군 또는 대장균 등 6개 항목 검사 실시
- 결과는 게시판 게시 또는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안내, 2년간 보관

소방용수 또는 화장실 용수 등으로만 사용되는 저수조는 청소 및 수질검사 대상에서 제외. 단, 화장실 세면시설로 연결된 저수조는 대상에 포함

○ 급수관 수질검사 등 관리 철저

-「수도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건축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학교는 급수관의 세척 등 관리 철저

구분	검사횟수	검사항목	관련규정
수질검사	2년 주기	7개 항목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 별표 7

※ 학교 먹는 물 수질검사 일괄 용역 시행을 통해 연 1회로 검사 주기 단축

- 준공검사(급수관의 갱생·교체 등의 조치를 한 경우 포함) 후 5년이 지난날부터 2년 주기로 급수관의 상태에 대한 일반검사(정체수) 실시
- 탁도, 수소이온 농도, 색도, 철에 대한 검사기준을 초과한 경우 급수관 세척 실시
- 급수관이 아연도강관인 경우 검사항목 중 검사기준을 초과하는 항목이 한 개 이상 있으면 반드시 이를 갱생하거나 교체

※ 기타 관련 사항은「수도법」등 참고

-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13. 12. 9.) 이행

건축연면적 5천제곱미터 미만인 학교도 저수조 및 옥내급수관 수질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행정안내 조치 →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 시 적극 개선조치

- 수질검사 등 조치사항은「수도법」에 따라 사립학교도 동일하게 검사 실시
-「수도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건축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학교는 수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교육 이수

※ 신규 지정 시 1년 이내, 이후 5년마다 8시간

2) 지하수 위생관리

○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지역 상수도의 학교 내 인입을 적극 추진

- 특히, 수질검사 결과 수질 변화가 심하거나, 반복적으로 오염물질이 검출되는 학교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학교별로 구체적인 추진계획 수립

○ 지하수 수질검사 등 관리 철저

- 「지하수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지하수를 음용수 또는 생활용수로 사용 시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 기준 또는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및 별표 4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한 수질검사 실시

구분	검사횟수	검사항목	관련규정
음용수	분기별로 연 4회 이상	전 항목 1회, 6개 일부항목 3회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표1
생활용수	3년마다 1회	19개 항목 1회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및 별표4 참고 ※ 1일 양수능력이 30톤 이상인 경우. 다만, 청소용・조경용・공사용・소방용 등은 제외

※ 기타 관련 사항은 「지하수법」, 「먹는물관리법」, 「학교보건법」 등 참고

- 음용 목적의 지하수 수질검사는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에 관한 규칙」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실시(「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별표5 라목)
- 정수 또는 소독 이후 검사결과 기준치를 초과한 지하수에 대해서는 원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초과 항목에 따른 조치 강구 (타 관정 개발, 초과 항목에 따른 정수장치 도입 등)
- 전 항목 검사결과 기준치를 초과한 항목에 대해서는 재검사 결과 적합 판정된 경우라도 매분기 별도검사 실시
- 지하수의 수질은 수시로 변화하여 미생물과 유해물질이 함유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급적 끓여서 공급하는 등의 안전 확보방안 강구
- 오존살균장치를 경유하여 급식시설 또는 음용수로 이용할 경우 브롬산염 발생 제거 대책 마련 후 사용
- '14년 조사한 자연방사성물질 함유실태 조사결과 원수에서 적용기준을 초과한 학교의 경우 정수장치 관리 철저 등 안전성 확보방안 강구

○ 지역 상수도의 교내 인입이 불가능한 학교는 지하수 개발 시 지하 암반층까지 굴착하도록 하여 안전한 식수를 학생들에게 공급

3) 정수기 위생관리

○ 정수기는 먹는 물 공급시설별 수질검사 결과, 위생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

○ 설치된 정수기는 수질검사, 소모품 교체, 내·외부 청소 등 관리 철저

- 정수기를 통해 공급되는 물에 대한 수질검사 의무화(분기 1회)

※ 장기간 미사용한 정수기를 사용할 경우 반드시 청소 등 위생관리상태를 확인하고, 필요시 수질검사(정기검사 병행) 등을 통해 안전성 확인 필요

구분	검사횟수	검사항목	관련규정
수질검사	분기별로 연 4회 이상 (2회는 개학 직전에 실시)	2개 항목 (총대장균군, 탁도)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

※ 냉·온수기(먹는샘물)의 경우 수질검사 대상에서 제외하되, 정수기와 유사(정수기능 또는 필터 설치 등)한 냉·온수기는 수질검사 대상에 포함

- 수질검사는 청소 또는 소독 직전 실시 등을 통해 청소 및 소독 주기(매월 초, 개학 직전 등) 설정

※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한 정수기는 과감히 철거조치(최종 부적합 또는 직전 4회 검사결과 중 2회 이상 1차 부적합 판정된 경우)하고, 학교 수질관리실태 상시관리를 위하여 수질검사 결과 취합 시 직전 청소 또는 소독 여부 확인조치 강구

- 실외 또는 직사광선이 비추는 곳, 화장실과 가까운 곳, 냉·난방기 앞 등 설치 금지

- 필터는 해당 정수기의 사용방법 설명서에 따라 정기적으로 교환하고, 고온・고압증기소독방법, 약품과 증기소독의 병행방법, 전기분해방법

등으로 6개월마다 1회 이상 물과 접촉하는 부분에 대해 청소소독을 실시(소독에 의한 약품이 정수기에 잔류하지 않도록 조치)

- 정수기별 관리카드를 비치하고, 관리현황 기록을 유지
- 학교 담당자를 1인 이상 지정하여 평상시 내·외부의 주기적인 청소(소독) 실시
- 정수기 관리업체의 부실관리(필터교체 미실시 등)로 인한 수질검사 부적합 시, 재검사 비용을 해당 업체에 징구 및 관리업체 재계약 시 반영하는 등 부실관리업체에 대한 대응 철저

○ 설치된 냉·온수기 소모품 교체, 청소 등 관리 철저

- 에어필터는 1년마다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교환
- 고온·고압증기소독방법, 약품과 증기소독의 병행방법 등으로 6개월마다 1회 이상 물과 접촉하는 부분에 대해 청소소독을 실시(소독에 의한 약품이 냉·온수기에 잔류하지 않도록 조치)

○ 온수제조기 기구 또는 음수기 등에 대한 관리 철저

- 정수기능을 포함한 제품의 경우 정수기와 동일한 관리기준 적용
- 특히 저수조, 배관 청소상태 등 주기적 확인과 온도 조절기, 제품의 각 기능상태, 램프 작동상태 등 수시 확인을 통한 성능 유지

4) 학교 먹는 물 관리실태 점검 및 관리지원

○ 학교 저수조, 급수관, 지하수, 정수기 등에 대한 수질검사 시료 채수는 학교 담당자 또는 교육지원청 담당자 입회하에 채수·봉인

※ 수질검사 업체 등에 일임 금지

❍ 교육지원청 자체 계획에 따라, 관내 학교에 설치된 정수기 등에 대한 자체점검 실시로 부실관리 예방

☞ 총 정수기 중 10% 내외 수준 자체 표본 수질검사 실시 및 실적 제출

❍ 수질검사 기관에 대한 수사 또는 행정처분 사항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또는 허가 기관이 해당 사항을 교육지원청과 공유할 수 있도록 협조 체제 구축('17년 국정감사 지적사항)

❍ 수질검사 기관에서 학교의 수질검사 시 그 결과를 해당 학교뿐만 아니라 해당 교육지원청에도 통보할 수 있도록 조치

☞ 교육청에서는 관내 학교 먹는 물 위생관리 지도 시 활용

❍「경기도교육청 학교 먹는물관리 조례」에 따른 위생관리 철저

- 교육(지원)청: 학교 먹는 물 수질검사 통합지원(일괄 용역) 추진
- 학교: 학교 먹는 물 관리계획 수립 및 먹는 물 시설에 대한 청소 및 소독 등 위생관리 철저

3 교사 내 환경위생 관리

가. 기본방침

○ 학교생활의 대부분을 교실에서 보내고 있는 성장기 학생들에게 실내 공기질 관리는 매우 중요하여 학교 신축 시부터 건축자재 등의 오염 가능성을 배제하고, 정기적인 확인 및 관리를 통하여 학생과 교직원에게 쾌적한 실내 환경 제공

○ 도로, 철도, 비행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피해 방지와 학교 폐기물에 대한 위생적인 처리방안 강구

나. 추진내용

1) 공기질 관리

○ 학교시설 내 환경위생 관리체계 구축

- 학교장은 환경위생 총괄책임자로서 업무의 영역 및 당해 학교의 업무 형편에 따라 학교시설 내 환경위생관리를 위한 환경위생관리자를 복수로 지정하는 등 환경위생업무로 인한 업무 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조치
- 환경위생관리자가 환경위생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요구하는 경우 관련 교직원은 적극 협조하도록 안내 조치
- 학교 공기질 관리에 개선이 필요한 경우 행정적 · 재정적 지원 적극 추진

○ 일상점검, 정기점검, 특별점검 시행 철저

- 교육장(학교장)은 관내 모든 학교에서 일상점검, 정기점검 및 특별점검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
- 학교장으로부터 일상점검, 정기점검 및 특별점검을 실시하는 데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 적극 지원(연간 지원계획 수립 · 시행 등)

구분	점검대상	점검횟수	검사항목	관련규정
일상점검	모든 학교	매일	육안으로	학교보건법 제4조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 학교 교사내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점검기준 교육부 학생건강증진 주요업무 추진방향
정기점검	모든 학교	상하반기 각각 1회	7개 ~ 12개 항목	
특별점검	신축, 증축, 개축, 개수 등	3년간	8개 항목	

○ 학교시설 내 공기질 측정 및 관리의 신뢰성 제고 강화

- 공기질 측정 시「학교 내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점검기준」및「학교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관리 매뉴얼」(6차 개정, '21.12.21.),「학교 공기질 측정·관리 업무 매뉴얼」(경기도교육청, '21.12.)에 따른 측정방법 등 준수 철저
- 공기질 측정을 위한 표본 교실은 원칙적으로 측정자가 해당 시설 방문 후 직접 선정

  ☞ 학교 관계자는 측정의 편의성을 위한 측정장소 등 안내 협조
- 공기질 측정 대상 교실 '부적합' 판정 시 해당 교실뿐만 아니라 전체 교실에 대한 오염물질 제거 및 취약 요인 개선 조치

  ☞ 부적합 판정에 따른 재측정 시 전체 교실 대상 무작위 표본 선정 후 재측정(1차 측정 교실 포함), 이 경우 재측정은 가급적 교육(지원)청 주관으로 실시: 컨설팅 및 개선효과 파악
- 공기질 측정결과 보고서 작성 및 제출 시 측정 상황(사진 등)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 외부 전문기관에 의한 공기질 측정 시 교육(지원)청 관계자 불시 현장 점검 또는 학부모(학운위 위원 등) 참관 등을 통한 통제방안 마련
- 외기 기상상태에 따른 교실 내 미세먼지 수준의 정확한 진단을 위하여 관내 학교의 일정비율(교육지원청 실정을 고려하여 설정)에 대해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기(12~3월)에 보다 정밀한 방법(중량법, 베타선 흡수법)으로 교실 내 미세먼지 측정 실시 추진

- 공기질 검사 결과는 학교 홈페이지 또는 가정통신문을 통해 안내

※ 정보공시와는 별도로 검사결과를 통보 받은 즉시 안내

○ 교육장(학교장)은 점검결과 적정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단계별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등 필요한 조치 강구

○ 학교시설 안에서의 라돈 및 석면에 대한 점검강화 및 신속한 후속조치

- 라돈 기준을 초과한 학교에서는 적극적인 환기, 주 거주 공간 재배치(상주 공간은 2층 이상), 저감시설 설치, 지속적인 측정관리 등 적극 조치
- 라돈 점검결과를 토대로 교실 내 라돈 저감을 위한 조치 강화
- 라돈 고농도 의심지역 내 학교의 경우 환기의 중요성 등에 대한 학교 구성원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적극 추진
- 석면의 경우 석면건축물의 손상상태 및 비산 가능성 또는 진동에 의한 손상가능성(위해성평가 결과 고려)이 있는 교실을 대상으로 정기점검 실시

○「학교보건법」 개정('22.6.시행) 사항에 따른 후속조치 철저

- 현재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점검기준 개정을 통해 현재 연 1회 이상 점검항목인 환기, 채광 및 조도, 소음, 상수도 및 하수도에 대한 점검주기 단축
- 공기질을 측정하는 장비에 대해서는 소급성 확보를 위한 검사 또는 정도검사를 연 2회 이상 실시

○ 교육장은 공기질 취약(우려) 학교를 대상으로 공기정화장치 가동, 미세먼지 측정기기 활용, 학교 내 환경위생 관리 등에 대한 컨설팅 및 공기질 점검 등을 포함한 특별점검 적극 추진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12월~3월) 기간 내 컨설팅 및 특별점검 실적 매주 단위 파악 예정

❍ 교실 내 설치된 공기정화장치 및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 및 관리 철저

- 체육관, 강당 등 대규모 시설에 설치를 추진하는 경우 반드시 관련 전문가의 자문 등을 거쳐 설치 추진
- 「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및 유지관리 업무안내서」('21.8)에 따른 청소 및 필터교체 주기 준수 등 위생관리 철저

※ 관리주기(안): 점검 및 청소(1~2개월), 필터교체(3~6개월)

- 임대 설치된 공기정화장치의 경우 관리업체의 관리실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구매 설치한 공기정화장치의 경우 학교에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행정·재정적 지원(필터 교체비용지원, 외부업체를 통한 위탁관리 등)
- 공기정화장치의 효율적 가동 및 관리를 위하여 매월 정기점검 실시 (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및 유지관리 업무안내서 별지 서식 활용)
-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기기 활용 및 관리(사용방법 등 포함) 철저

❍ 신축, 증·개축, 리모델링 시 교사 내 환경위생 관련 규정 적용 철저

- 학교 설립·인가(학교 설립계획) 시에는 「학교보건법」 제4조의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 및 조치
- 학교 신축, 증·개축, 리모델링 시 사용하는 건축재료, 가구류 등은 화학물질의 방출이 적은 친환경 건축자재 사용

※ 책상, 의자 등 학교 비품은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하다는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할 것

- 학교 신축, 증·개축 및 리모델링 완료 시에는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 및 「학교 내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점검기준」에 따라 공기질 측정

※ 측정항목(8개): 폼알데하이드, 총휘발성유기화합물, 라돈(건축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숙사로 한정), 벤젠·톨루엔·에틸벤젠·자일렌·스티렌

- 공기질 측정 시에는 교육기자재(책상, 의자 등)가 있는 상태에서 측정

- 기준초과 학교는 우선 환기량을 늘리고, Bake-Out(실내 내부를 난방 등으로 일시적으로 온도를 높인 후 환기시키는 방법) 등을 실시한 후 2, 3차 측정
- 공기질 유지기준 초과 시 반드시 저감조치 후 기준치 이내에서 학교 시설 사용

○ 유치원 공기질 관리수준 향상을 위한 방안 강구
- 교육지원청별 유아교육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별도의 유지·관리기준을 정하지 않은 유치원의 경우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의2에 따른 학교시설 내 공기 질 유지·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교육 및 홍보 추진

※ 병설유치원의 경우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공기질 점검 시 유치원 교실 포함 또는 점검지점 1개소 추가 등 검토, 단설·사립유치원의 경우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 측정항목 및 지점 검토(유치원 환경관리 담당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공기질 점검 등 환경위생 관리현황 정기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철저)

○ 「경기도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공기정화설비 유지·관리 철저
- 공기정화설비 점검결과 홈페이지 공개 및 점검내용 기록 관리
- 필터 교체 시 필터의 성적서 등 확인

○ 학교 맞춤형 미세먼지 관리기술 개발사업 추진<교육부 추진사항>
- '19년~'24년 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동으로 학교 맞춤형 미세먼지 관리기술개발 사업 추진

2) 소음 관리

○ 학교 소음도 측정 및 방음시설 설치 요구

- 매년 상반기 중 외부소음으로 인하여 수업에 지장이 있는 학교를 조사한 후 교육지원청 담당공무원이 자가 측정 우선실시(보통 소음계 이상)

  ☞ 소음도가 높거나 방음 대책 추진 대상 학교에 대하여는 보건환경연구원 등에 학교 또는 교육지원청이 공식적으로 소음도 측정 의뢰

- 소음도 측정 결과 도로, 철도, 항공기 소음 허용기준 초과 학교에 대하여는 소음 발생원 관리기관에 방음시설 설치 요구
- 고속도로 이용 차량에 의한 소음피해 학교 관리강화를 위하여 학교 부지경계선이 고속도로와 30미터 이내인 학교의 소음 점검방법* 개선

  * 소음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교실의 창문 외부 0.5～1m 지점에서 소음측정(30분 간격으로 5분간 측정 후 산술평균)

○ 학교설립자의 방음 대책

- 소음 유발지역, 피해지역에 학교를 나중에 설립한 경우는 학교설립자가 방음시설을 설치하고 유지비용도 부담하는 것이 원칙
- 소음피해 예상 지역에는 학교 신설을 금지하되, 불가피한 경우는 학교설립자가 반드시 충분한 방음시설을 학교기본설계에 포함하고, 그 유지비도 학교운영비에 계상하여야 함

○ 항공기 소음 관련 방음 대책

- 「항공법」에 의한 항공기 소음 방지시설, 냉방시설을 지원받은 경우는 시설 인수자(학교 및 교육청)가 유지비용을 부담
- 이중창의 노후화로 밀폐성이 떨어지는 학교의 방음창 개·보수, 냉방시설의 유지보수와 전기료 등의 운영비 지원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공항소음 대책사업의 계획수립 등)

○「경기도교육청 공항소음 피해학교에 대한 지원 조례」에 따른 공항 소음대책 지역 등의 학교를 대상으로 피해 실태조사와 교육환경 개선 추진

○「경기도교육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 소음피해 학교 지원 조례」에 따라 군소음 피해학교 실태조사 및 학교의 요구사항 조사를 통한 군소음 피해학교 지원 사업 실시(계속사업)

3) 소독 관리

○ 학교 방역소독 관리규정 준수

구분	점검대상	점검횟수	관련규정
방역소독	모든학교	연 5회 이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

- 전문 소독업체에 의뢰하여 연 5회 이상 정기적으로 소독 실시

· 소독범위: 학교 전체(학교 내 모든 시설과 장소)

· 소독횟수: 4월~9월 2개월에 1회(연 3회), 10월~3월 3개월에 1회(연 2회)

· 소독시기: 소독약품의 잔류성이나 독성을 감안하여 휴일이나 주말 등 학생이 없는 시간에 실시

- 소독실시 후 업체로부터 소독증명서*를 제출받아 적정한 약품 사용 여부 등 관리(* 감염병예방법 제5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2항)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제품을 용법·용량에 따라 안전하게 사용

4) 매점 위생관리

○ 건강하고 안전한 식품 판매 방향 마련

- 학교담당자의 위생적인 매점 운영에 대한 관심과 책임 의식 제고
- 지방자치단체, 교육청과 학교 간 상호 연계하여 합동단속 등 대응책 강구
- 학교에서 매점 사용 허가 시 계약조건에 판매제한 품목을 자세히 명시하여 유해, 불법 식품 등을 원천적으로 근절
- 매점 운영 계약 시 교육지원청 및 학교 실정에 맞게 관리하되(「매점 운영 특수조건」 참고), 고열량·저영양, 고카페인 함유 등 판매금지 식품은 철저히 제한
-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지정 의무화(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 매점 위생관리 지도점검 실시

구분	점검주체	점검횟수	관련규정
자체점검	학교	분기별 1회 이상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8조, 제9조 식품위생법 제3조, 제4조 「학교 매점·자판기 위생관리 등 지침」(경기도교육청, '21.6.)
현장점검	교육지원청	연 1회 이상	

- 매점 운영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교육지원청 현장방문 지도점검 실시
- 매점에 대한 전반적 위생 상태와 판매 식품의 적정성, 매점계약 사용 허가 시 판매제한품목 명시 여부(매점 운영 특수조건)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
- 판매금지 식품이 적발될 경우 즉시 시정 조치(판매중지, 폐기 또는 반품)

4 학교 석면 건축물 관리

가. 기본방침

○ 학생 및 교직원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학교 석면 건축물에 대한 올바른 관리

○ 학교석면건축물 관리실태에 대한 교육지원청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나. 추진내용

○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지정·신고 및 의무교육(신규·보수) 이수 철저

- 학교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지정·변경 신고방법: 나이스시스템

· 지정신고: 건축물 석면 조사결과 제출 시 신고

· 변경신고: 인사이동 등 변경 사유 발생 시 10일 이내에 신고

※ 나이스시스템(석면관리) 추가등록(기 등록 삭제 금지)

-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교육은 신고 또는 변경신고(교육을 받지 않은 자에 한하여 적용)를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8시간 이상의 석면안전관리교육(신규자 교육) 이수

-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신규자 교육을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 4시간 이상의 보수교육 이수

※ 법정교육 미이수시 과태료 부과 대상(석면안전관리법 제49조):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미지정(미신고 또는 변경 미신고 포함), 법정교육 미이수자 각각 500만원 이하 과태료

- 교육부 학교석면안전관리인 교육 위탁기관('22.5.2.): 선문대학교, 대한산업안전협회, 한국석면환경협회, 한국석면건축물안전관리협회, 돋봄이앤씨

※ 학교석면안전관리인 교육 위탁기관 및 위탁업무(교육부고시 제2022-11호)

-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신규자 교육은 집합교육으로, 보수교육은 집합교육 또는 원격교육 방법으로 가능한 바, 법정교육 이수상태 확인 철저

※ 일부 신규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이 보수교육인 원격교육을 이수하고, 신규자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등록하는 사례 확인

❍ 학교석면건축물 관리의 안전성・신뢰도 제고

- 학교에서는「석면안전관리법」및「학교 석면관리 매뉴얼(5차 개정)」준수하여 관리
- 학교 석면 조사결과(석면지도, 위해성평가 등)에 대한 재확인 등을 통해 오류사항 확인 시 보완조치
- 6개월마다 석면건축물의 손상 상태, 석면비산 가능성 등을 조사(위해성평가*) 실시 및 후속 조치 철저**

* 석면지도에 표시된 석면함유 자재를 대상으로 각각의 실별로 위해성평가를 실시하고, 석면건축물 관리대장(NEIS에 상・하반기 차수 생성)에 그 결과를 기재(동일물질별 대표적인 위해성평가 결과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 반드시 개별 실별로 작성 후 기재)

** 위해성평가 결과 '중간' 등급 이상인 학교에 대해서는 긴급 개・보수(완전 해체·제거가 어려울 경우 파손부위 또는 파손 우려 부위 등에 대한 긴급 조치 등 실시) 등 우선 조치

※ 위해성평가 결과를 토대로 '중간' 등급학교에 대해서는 반드시 손상구역 보수 등을 통해 '낮음' 으로 관리

- 학교 석면 위해성평가 결과를 석면건축물 관리대장(NEIS에 상・하반기)에 등재하기 전 학교운영위원회 보고 등을 통해 교직원, 학부모에게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 신뢰성 있고 투명하게 관리
- 학교 건축물에 대한 유지·보수공사 시 석면 관련 정보제공(석면함유 건축자재 분포 및 위해성 등급 등) 및 감시·감독 철저

- 석면 해체·제거·손상 발생 등으로 석면함유 자재의 위치 및 면적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 나이스에 필수 반영(석면 함유 건축자재의 유형 및 면적 확인)
-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교내 석면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및 석면안전교육 실시

※ 학교 홈페이지, 교내 방송, 가정통신문 등을 통한 학교 구성원(학생, 교직원, 학부모) 대상 석면함유 건축자재 분포 및 위해성평가 등급 등 공개

❍ 교육지원청의 학교 석면관리 실태 지도·점검 강화

- 교육지원청 단위에서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석면 위해성평가 검토(점검)단 등을 구성하여 학교의 석면 위해성평가 결과에 대한 표본 확인·검증 시행(석면학교의 15% 이상)
- 학교내 관리가 미흡한 학교를 대상으로 업무지도 또는 컨설팅 지원

※ 석면 위해성평가 관리 감독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 촉구(감사원 지적사항)

- 교육지원청에서 석면 관리에 대한 전문성 제고를 위해 학교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을 대상으로 협의(설명)회 또는 전문교육 실시
- 최초 조사 시 무석면 학교, 최초 조사 이후 석면해체·제거를 통해 무석면으로 관리중인 구역 등에 대해서도 확인조치 → 무석면학교 인증 전까지는 석면학교에 준수하여 관리
- 석면해체·제거 이후 무석면학교 인증 검토시에는 해당 학교 현장을 확인(석면 의심구역 존재여부 등)하고, 필요시 전문 조사업체를 동행토록 하는 등 확인 조치

5 보고사항

순번	보 고 사 항	보고대상	보고기한	보고방법	비고
1	2023년도 교육환경보호제도 관련 소송현황	해당 교육지원청	2024. 2. 23.	업무관리시스템	별도 서식
2	학교주변 유해환경정비 추진현황	모든 교육지원청	2024. 7. 9. 2024. 12. 10.	자료집계시스템	별도 서식
3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불법 금지시설 현황 및 정비실적	해당 교육지원청	2024. 7. 9. 2024. 12. 10.	자료집계시스템	별도 서식
4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적법 해제시설 현황	모든 교육지원청	2024. 7. 9.	자료집계시스템	별도 서식
5	학교 먹는물 이용 및 정수기 수질검사 현황	모든 교육지원청	4. 3. / 7. 1. 9. 30. / 12. 27.	자료집계시스템	별도 서식
6	지하수 수질검사 결과	해당 교육지원청	4. 3. / 7. 1. 9. 30. / 12. 27.	자료집계시스템	별도 서식
7	학교 먹는물 시설 개선 실적	해당 교육지원청	시설개선 즉시	업무관리시스템	별도 서식
8	학교 정수기 특별점검 실적	모든 교육지원청	4. 3. / 7. 1. 9. 30. / 12. 27.	자료집계시스템	별도 서식
9	저수조 수질검사 결과	모든 교육지원청	2024. 12. 27.	자료집계시스템	별도 서식
10	급수관 수질검사 결과	모든 교육지원청	2024. 12. 27.	자료집계시스템	별도 서식
11	교사 내 환경위생 분야 점검실적	모든 교육지원청	2024. 7. 5. / 2024. 12. 6.	자료집계시스템	별도 서식
12	학교 매점·자판기 운영 현황	해당 교육지원청	2024. 4. 5.	자료집계시스템	별도 서식
13	학교 매점·자판기 위생관리 등 지도 점검 실적	해당 교육지원청	2024. 12. 27.	자료집계시스템	별도 서식

【참고자료 1】 고발요령 및 절차

고발요령 및 절차

□ **담당 공무원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업소를 인지하면,**

① 고발의뢰서

② 고발장

③ 담당 공무원 진술서

④ 입증서류(채증사진, 행정공문서 등)을 구비해서 관할 경찰서 민원실에 고발을 접수(우편 접수가능)

□ **관할 경찰서는 고발 의뢰서를 토대로 사실 확인 후 검찰청에 송치**

[예시1]

고 발 장

1. 피고발인 인적사항

2. 영업장소

3. 고발사유 및 내용

4. 관계법규

5. 첨부서류

2024. . .

○ ○ 교 육 청 교 육 장

○○경찰서장 귀하

[예시2]

진　　술　　서

○ 소　속 :

○ 직　명 :

○ 성　명 :

- 업 소 명 :

- 업　　종 :

- 업 주 명 :　　- 주민등록번호 :

- 영업장소 :

2024.　　.　　.

위 진술인　　(인)

○경찰서장 귀하

【참고자료 2】 정수기 및 냉·온수기 관리카드

정수기 관리카드

점검일시 (년월일)	설치장소 적정성 (○, ×)	필터 교환시기	청소·소독시기 (증기소독, 약품소독 등)	점검자 (성명, 서명)

< 참고사항 >

1. 정수기 설치 금지장소
   - 실외 또는 직사광선이 비추는 장소, 화장실과 가까운 장소 또는 냉·난방기 앞에 설치하면 안됩니다.
2. 정수기 관리방법
   - 필터는 해당 정수기의 사용방법 설명서에 따라 정기적으로 교환하여야 합니다.
   - 6개월마다 1회 이상 고온·고압 증기소독방법, 약품과 증기소독의 병행방법, 전기분해방법 등으로 소독·청소하여야 합니다.
   - 소독으로 인한 약품이 정수기에 잔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 총대장균군, 탁도 항목이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등에 관한 규칙」에 의한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하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3. 관리카드는 정수기에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하여 사용자가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냉·온수기 관리카드

점검일시 (년월일)	설치장소 적정성 (○, ×)	에어필터 교환시기	청소소독 (증기소독, 약품소독)	점검자 (성명, 서명)

< 참고사항 >

1. 냉・온수기 설치 금지장소
   - 실외 또는 직사광선이 비추는 장소, 화장실과 가까운 장소, 냉・난방기 앞에 설치하면 안됩니다.
2. 냉・온수기 관리방법
   - 에어필터를 1년마다 1회 이상 교환하여야 합니다.
   - 6개월마다 1회 이상 고온・고압 증기소독방법, 약품과 증기소독의 병행방법 등으로 소독・청소하여야 합니다.
   - 약품소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약품이 냉・온수기에 잔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3. 관리카드는 냉・온수기에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하여 사용자가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참고자료 3】 2024년도 주요 변경내용

2024년도 주요 변경내용

구분	2024년도 변경내용	비고
1. 교육환경보호제도 운영관리 내실화	○ 교육환경보호구역 운영 관련 각종 정보 공개 철저 -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에 대한 심의 정보는 심의 결과가 통보된 날부터 3일 이내 교육환경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개 (교육지원청에서 직접 공개하기가 어려운 경우 한국교육환경보호원에 관련 자료 송부 후 공개 요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	법령 이행사항 안내
	○ 업무담당자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참여 - 교육환경보호 정책의 이해 향상을 위한 이러닝 입문 과정인 '교육환경보호제도 이해'(12차시) 연수과정 운영(한국교육환경보호원 이러닝 교육과정 운영) - 교육환경보호업무 신규 담당공무원을 위한 단기 직무과정(8시간, 3월 및 8월, 신규자) 및 직무연수 심화과정(18시간, 6월) 운영	
2. 학교 석면건축물 관리 철저	○ 학교석면건축물 관리의 안전성·신뢰도 제고 - 학교 석면 위해성 평가 결과를 석면건축물 관리대장(NEIS에 상·하반기)에 등재하기 전에 학교운영위원회 보고 등을 통해 교직원, 학부모에게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 신뢰성 있고 투명하게 관리	국정감사 지적사항 반영('23) ※ 환노위
	○ 학교 석면 위해성평가 결과에 대한 확인·점검 체계 마련 및 역량강화 지원 - 교육지원청 단위에서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석면 위해성 평가 검토(점검)단 등을 구성하여 학교의 석면 위해성평가 결과에 대한 표본 확인·검증 시행 - 학교 내 관리가 미흡한 학교를 대상으로 업무지도 또는 컨설팅 지원 ※ 석면 위해성평가 관리 감독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 촉구('20, 감사원) - 교육지원청에서 학교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을 대상으로 협의(설명)회 또는 전문교육 실시하여 석면 관리에 대한 전문성 제고	